



제 417회 국회 (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의무 제외〉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86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의무 제외 ..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10.

3. 회 부 일 :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제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본 보관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 또한 별도로 출력하여 낚시어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의무 제외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낚시어선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 의무를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① ~ ④ (생략) ⑤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u>승선자명부의 사본</u> 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승선자명부(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명부는 제외한다)</u> ----- ----- -----.

나. 검토의견

- ☐ 현행법¹⁾은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 기관의 장에게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이하 ‘승선자명부’라 함)를 제출하고, 승선자명부 사본을 3개월 동안 낚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이하 “승선자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어선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실제 현장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²⁾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제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낚시어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낚시어선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낚시어선업 운영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424

2) 낚시어선 승선자신고 시스템 ‘낚시海앱’. ☞ 시스템의 개요는 [참고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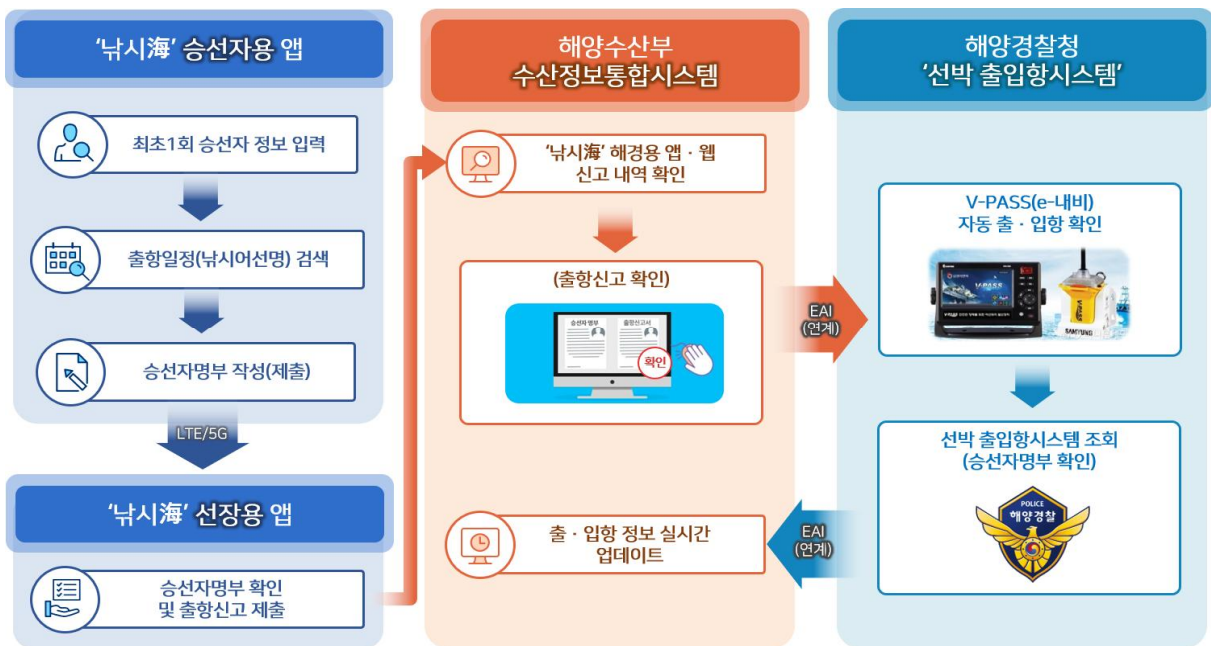
참 고

낙시어선 승선자신고 시스템 개요

□ 주요 기능

- (정보제공) 낙시어선 관련 안전 및 행정정보* 제공
 - * 선장의 해기사자격, 선박제원, 선박검사정보, 낙시어선업 신고 여부 등
- (긴급구조) 승선자가 승선정보를 가족·지인과 공유, 선장과 승선자가 긴급구조 요청 시 위치정보 원격 수집으로 구조에 활용(해경)
- (사용편의) 최초 1회 정보 등록으로 승선자명부 작성·제출 및 입출항 신고 가능, 해경의 신속한 출항 승인 지원

< 낙시海앱 출항신고 업무 흐름 >



□ 운영 경과

- (제작구축) 낙시어선 승선자 안전을 위한 “낙시海”앱 구축(‘18.12)
- (시범운영) “낙시海”앱 시범운영 실시(‘19.9, 동·서·남해 5개 파출소)
- (서비스 개시) “낙시海”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20.10.23~)

□ 이용 현황(‘23.12.31 기준 누적)

- 등록 낙시어선 2,105척, 앱 다운로드 91,527회, 승선명부작성 266,532건